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방 위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방위사업청의 일반물자류 조달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법령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
- 나. 행정권한의 위탁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 내용 수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

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전력지원체계의 분류)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지원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차량, 특수차량, 전원·동력장치, 감시지원장비, 정비장비, 탄약·유도탄장비, 전투지원일반장비, 측정장비, 통신전자장비, 근무지원장비, 수리부속 등 전투지원장비(부품)
2. 방탄류, 피복·장구류, 식량류, 화학물자류, 유류, 특수섬유물자, 탄약·유도탄물자, 전기·전자물자, 근무지원물자,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
3. 의무장비, 의무물자 등 의무지원물품
4. 교육훈련장비, 교육훈련물자, 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물품
5. 자원관리정보체계, 국방 M&S체계(무기체계로 분류된 전력은 제외), 기반운영환경(무기체계로 분류된 통신체계 제외) 등 국방정보시스템
6.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

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
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방위사업청장은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조달과 품질보증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한다. 이 경우, 위탁사무의 세부적인 수행절차는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한다.

1. 제2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지원장비(부품) 중 상용차량 및 상용장비(그 수리부속을 포함한다)
2. 제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지원물자
3. 제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지원물품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작전·훈련·보안상 긴급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위탁하지 아니한다.

1.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정비관리를 위해 장비와 동시에 조달하는 품목
2. 위장망, 암호장치, 군사지도 등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
3. 외국정부의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품목
4.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작전·훈련·보안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조달청장과 합의한 품목

⑤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한 군수품이라 하더라도, 군수품의 표준화, 군수품목록정보 관리에 있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조달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제3항의 품질보증 사무의 위탁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2조의2(전력지원체계의 분류)</u> <u>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</u> <u>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</u> <u>같다.</u> <u>1. 일반차량, 특수차량, 전원 ·</u> <u>동력장치, 감시지원장비, 정비</u> <u>장비, 탄약 · 유도탄장비, 전투</u> <u>지원일반장비, 측정장비, 통신</u> <u>전자장비, 근무지원장비, 수리</u> <u>부속 등 전투지원장비(부품)</u> <u>2. 방탄류, 피복 · 장구류, 식량</u> <u>류, 화학물자류, 유류, 특수섬</u> <u>유물자, 탄약 · 유도탄물자, 전</u> <u>기 · 전자물자, 근무지원물자,</u> <u>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</u> <u>3. 의무장비, 의무물자 등 의무</u> <u>지원물품</u> <u>4. 교육훈련장비, 교육훈련물자,</u> <u>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</u> <u>물품</u> <u>5. 자원관리정보체계, 국방 M&</u> <u>S체계(무기체계로 분류된 전</u> <u>력은 제외), 기반운영환경(무</u> <u>기체계로 분류된 통신체계 제</u>		

제29조(조달방법 등) ①·② (생략)

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상 군수품, 구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<신 설>

외) 등 국방정보시스템

6.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

제29조(조달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방위사업청장은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조달과 품질보증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한다. 이 경우, 위탁사무의 세부적인 수행 절차는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한다.

1. 제2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지원장비(부품) 중 상용차량 및 상용장비(그 수리부속을 포함한다)

2. 제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지원물자

3. 제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지원물품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작전·훈련·보안상 긴급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위탁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1.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정비관리를 위해 장비와 동시에 조달하는 품목
 2. 위장망, 암호장치, 군사지도 등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
 3. 외국정부의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품목
 4.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작전·훈련·보안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조달청장과 합의한 품목
- ⑤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한 군수품이라 하더라도, 군수품의 표준화, 군수품목록정보 관리에 있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조달한 것으로 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전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613